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실종 시 계정대리인의 지정〉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0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실종 시 계정대리인의 지정(안 제 23조의7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실종 시 계정대리인의 지정 (안 제23조의7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
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이하 “계정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3조의7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OS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계정대리인 지정 시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함(제2항).
- 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대리인이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7(계정대리인의 지정) ①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이하 “계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계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u>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u>

현행	개정안
	계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한 정보 내지는 정보 관리권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소위 ‘디지털유산’의 승계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가 이용자의 사망을 이유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민법상 상속은 기본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민법」 제1005조¹⁾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유산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설령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추모할 권리 측면에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디지털유산 또는 그 관리권의 승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12·29 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²⁾.

○ 현재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책규정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현수, '네이버·카카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계정 정보 공개불가 결론', 연합뉴스, 2025.1.6.

<디지털유산 관련 KISO 정책규정>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참고로 디지털유산의 승계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³⁾,

- 미국은 2014년 연방 차원에서 미국 통일주법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Uniform Fiduciaries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UFADDA)」을 승인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수정한 「수정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Revised Uniform Fiduciaries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DA)」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도입 중임.
- 프랑스는 2016년 10월 제정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3) 박소영,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4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3.7.

에서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기존 상속법상 포괄승계 원칙을 적용하여 2018년 페이스북(Facebook) 이용 계약에 따른 계정접속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계정대리인의 지정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는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한 정보 중에는 명예훼손 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⁴⁾나,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사생활 등에 관한 민감정보⁵⁾,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공개되는 경우 기업 등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밀 등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계정대리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허용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상 권리침해정보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정대리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디지털유산의 승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법」상 상속과는 별개의 절차인바, 디지털유산이
「민법」상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계정대리인의
접근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 가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상속인
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저작재산권⁶⁾이 승계됨⁷⁾.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계정대리인과 「민법」상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를 갖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갖는 자와 접근권한을 갖는 자가 달라지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OS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므로 규율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승계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법제처는 계정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지정 절차,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기준, 계정대리인의 접근 방식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용자의 계정에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6) 「저작권법」

제1관 저작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7) 저작인격권의 경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승계되지 않음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법률 간 적용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연락처 등 특정 정보로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서비스별로 계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행정안전부 등 공공 영역에서 계정대리인의 지정·관리를 맡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 또는 그 관리권한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려는 동법 개정안 다수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230

8) 의안번호 제2208046호(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제2209252호(신영대의원 대표발의)